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가합37403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성, 나수지, 강소혜

피 고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피고 1,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호정, 정병기

3.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진영

변론종결 2020. 4. 29.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는 공동하여 84,051,447원과 이에 대한 2019. 5. 1. 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D 주식회사는 175,642,275원과 이에 대한 2019. 5. 1.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5/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는 공동하여 548,067,570원과 이에 대한 2019.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주식회사는 372,835,211원과 그 중 266,887,817원에 대하여는 2019.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4,246,5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01,700,80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전선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사업자들이고, 구 B 주식회사는 2008. 7. 2. 전선제조업 등을 하는 피고 B 주식회사와 투자사업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C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담합행위

원고와 피고들,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1)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 4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실시한 K2)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내부에서 낙찰자를 결정하고 그 회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였다.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6. 29. 원고와 피고들을 비롯한 위 회사들의 위 담합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원고와 피고들을 비롯한 위 회사들에게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결을 하였다(L).

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손해배상소송 경과와 원고와 피고들의 손해배상금 부담액

1)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5. 11. 16. 원고와 피고들을 비롯한 위 회사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책임을 구함)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6879호).

2) 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날인 2018. 6. 26. 원고와 피고들, F, G, J은 판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판결 결과에 따라 각 회사가 부담해야 할 내부 부담비율을 '담합으로 인정된 입찰의 총 매출액 중 각 회사가 낙찰받은 입찰건의 매출액의 비중'을 기준으로 정하고(2012. 12. 31.과 2013. 5. 6. 각 공고된 일명 쟁점일찰1, 쟁점일찰2가 판결선고결과 손해액 산정에 각각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4가지 경우를 구분하여 정하였다), 손해배상금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보고서상 매출액 비율로 6개사가 판결선고된 손해배상금 전부를 공동 지급하기로 한다. ② 판결문에 추가로 제외되는 입찰 건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분담비율을 다시 산정한다. ③ 선고된 손해배상금 중 위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 지급해야 할 금액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 판결선고일에 자신이 분담할 손해배상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못한 자는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15%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기로 한다.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구체적인 부담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업체명	(1) 손해액산정에 쟁점입찰1, 2가 모두 포함된 경우 최종분담률(%)	(4) 손해액산정에 쟁점입찰1, 2가 모두 제외된 경우 최종분담률(%)
1	피고 B	33.2063	40.1795
2	원고	29.7957	21.2185
3	E		
4	피고 D	16.4906	19.9403
5	F	18.8458	18.3429
6	G	1.6251	0.2715
7	H		0.0000

8	I		
9	J	0.0365	0.0472
합 계		100.0000	99.9999

3) 위 법원은 2018. 6. 27. 쟁점입찰1, 2를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켜 합계 7,470,732,22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따라 7,470,732,223원과 이에

대한 2018. 6. 28.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액을 구하면 9,888,837,343원이 되고, 위 9,888,837,343원에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위 표 (1)항 부담률을 적용하면 위 금액 중에서 원고는 2,946,447,965원을, 피고 B와 C는 3,283,720,818원을, 피고 D는 1,630,724,771원을 각 부담하게 된다.

4)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피고 B, 피고 C, I가 항소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8나13347호). 위 법원은 2019. 1. 29. 손해배상 대상 입찰목록 중 2건(위 판결의 별지1 목록 중 순번 14-2번 낙찰자 G, 순번 15-1번 낙찰자 원고. 이 사건 합의 중 쟁점입찰1, 쟁점입찰2의 일부에 해당한다)을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되, 원고와 피고 B이 손해배상액 중 30%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그 부분 항소를 받아들여 30%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고, 나머지 항소하지 않은 70%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항소인에게 유리하고 피항소인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그대로 인정하여 총합계 7,211,898,6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7,211,898,625원과 이에 대한 2018. 6. 28.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액을 구하면 9,561,540,442원이 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5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손해배상사건에서 항소심판결에 의하면 쟁점입찰1, 2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손해배상액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내부 부담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하고,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위 표 (4)항 부담률을 적용해야 한다.

이 사건 합의 중 (4)항 부담률을 적용하면, 원고는 부담률이 29.7957%가 아니라 21.2185%가 되어 917,630,852원(=2,946,447,965-2,028,817,113)을 덜 부담해야 하고, 피고 B와 C는 부담률이 33.2063%가 아니라 40.1795%가 되어

558,061,855원(=3,841,782,673-3,283,720,818)을 더 부담해야 하며, 피고 D는 부담률이 16.4906%가 아니라 19.9403%가 되어 421,759,289원(=1,906,602,599+

145,881,461-1,630,724,771)을 더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원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피고들로 하여금 공동 면책을 얻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원고가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배상한 손해액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부담부분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93,326,679원($=558,061 \times 0.884$), 피고 D는 372,835,211원($=421,759,289 \times 0.884$)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와 피고들의 내부 부담비율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항소하여 적극 다툼 결과 항소심법원의 쟁점입찰1, 2 중 일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져 판결선고결과 손해배상액이 일부 줄어들었는데도 만약 피고들 주장과 같이 1심판결과 동일하게 쟁점입찰1, 2 모두 손해액산정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합의 중 (1)항 부담률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이는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이 쟁점입찰1, 2에 관한 부분 중 30%만 항소함으로써 나머지 70% 부분은 항소심에서 금액 변동 없이 1심과 동일하게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었는데 마치 쟁점입찰 1, 2에 관한 부분 전체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된 것처럼 이 사건 합의 중 (4)항 부담률을 적용한다면 이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유리하고, 원고가 항소하면서도 스스로 손해배상액 자체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은 쟁점입찰1, 2 관련 70%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이 부분 낙찰자인 원고와 G를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들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을 비롯한 위 회사들은 이 사건 합의 당시에 '판결문에 추가로 제외되는 입찰 건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부담비율을 다시 산정하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위 회사들의 의사는, 예상한 경우를 벗어나는 판결선고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그 판결선고결과에 취지에 맞게 부담비율을 다시 합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와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합의 주체의 의사, 원고와 피고 B, C가 항소한 범위, 항소심 판결선고결과 인정된 손해배상액의 범위, 공평의 원칙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각

분담률을 새롭게 정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실질적으로
쟁점입찰1, 2 관련 손해배상액이 70%만 인정된 경우와 같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 중 (1)항
분담률(쟁점입찰1, 2 관련 손해배상액이 100% 인정된 경우)과 이 사건 합의 중 (4)항
분담률(쟁점입찰1, 2 관련 손해배상액이 0% 인정된 경우)을 감안하여 쟁점입찰1, 2 관련
손해배상액이 70%만 인정된 경우 원고와 피고들의 각 분담률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업체명	(1) 손해액산정에 쟁점입찰1, 2가 모두 포함된 경우 최종분담률(%)	(4) 손해액산정에 쟁점입찰1, 2가 모두 제외된 경우 최종분담률(%)	손해액산정에 쟁점입찰1, 2 중 70%만 포함된 경우 최종분담률(%)
1	피고 B	33.2063	40.1795	35.2983 (40.1795-33.2063=6.9732 6.9732×0.7=4.8812 40.1795-4.8812=35.2983)
2	원고	29.7957	21.2185	27.2225 (29.7957-21.2185=8.5772 8.5772×0.7=6.0040 21.2185+6.0040=27.2225)
3	E			
4	피고 D	16.4906	19.9403	17.5256 (19.9403-16.4906=3.4497 3.4497×0.7=2.4147 19.9403-2.4147=17.5256)
5	F	18.8458	18.3429	18.6949 (18.8458-18.3429=0.5029 0.5029×0.7=0.3520 18.3429+0.3520)
6	G	1.6251	0.2715	1.2190 (1.6251-0.2715=1.3536 1.3536×0.7=0.9475 0.2715+0.9475=1.2190)
7	H		0.0000	
8	I			
9	J	0.0365	0.0472	0.0397 (0.0472-0.0365=0.0107 0.0107×0.7=0.0075 0.0472-0.0075=0.0397)
합 계		100.0000	99.9999	100.0000

위 부담률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각 업체가 항소심판결 후 부담할 금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업체명	1심판결선고 후 분담액 (1) 부담률 적용	2심판결선고 후 분담액 새로운 부담률 적용	항소하지 않은 업체의 분담액	최종 분담액 (1심판결선고 후 분담액과의 차액)
1	피고 B	3,283,720,818	3,375,061,230 35.2983%		3,375,061,230 (+91,340,412)
2	원고	2,946,447,965	2,602,890,347 27.2225%		2,602,890,347 (-343,557,618)
3	E				
4	피고 D	1,630,724,771	1,675,717,332 17.5256%	145,881,461	1,821,598,793 (+190,874,022)
5	F	1,863,630,261	1,787,520,424 18.6949%	166,716,361	1,954,236,785 (+90,606,524)
6	G	160,702,015	116,555,178 1.2190%	14,376,188	130,931,366 (-29,770,649)
7	H	-	-		
8	I	-	-		
9	J	3,611,513	3,795,931 0.0397%	322,891	4,118,822 (+507,309)
합 계	9,888,837,343원	9,561,540,442원	327,296,901원		

이에 의하면, 원고와 G이 자신의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부담한 손해배상액 총액은 373,328,267원(=343,557,618+29,770,649)이고, 위 금액 중 원고가 초과 부담한 금액의 비율은 0.9202(=343,557,618÷373,328,267)이다.

따라서 피고 B와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피고들이 부담을 면한 금액인 91,340,412원에 0.9202를 곱한 금액인 84,051,447원(=91,340,412×0.9202,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지급을 요청한 기한 다음날인 2019. 5.

1.부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6. 1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D는 원고에게 피고 D가 부담을 면한 금액인 190,874,022원에 0.9202를 곱한 금액인 175,642,275원($=190,874,022 \times 0.9202$)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 D에게 지급을 요청한 기한 다음날인 2019. 5. 1.부터 피고 D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6. 1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은영 판사 최지영 판사 김주영

1)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2)전차선을 일정한 높이로 수평하게 유지시킬 목적으로 행거 이어(hanger ear) 또는 드로퍼(dropper)를 이용하여 매달기 위하여 전차선 상부에 가설하는 전선 또는 케이블